[여기에 입력]

**‘SSCC’** 동아리 회칙

제 **1**장 총칙

**1**장 **1**조 **(**명칭**)** 본 회의 명칭은 숭실 컴퓨팅 클럽이라고 하며 **S.S.C.C**를 약칭으로 한다**.** 제**2**조 **(**분과**)** 본 회는 숭실 대학교 동아리 연합회 학술분과에 소속한 정식 동아리이다**.** 제**3**조 **(**위치**)** 본 회의 본부는 숭실 대학교 안에 둔다**.**

제**4**조 **(**목적**)** 본 회는 컴퓨터를 통한 학술 연구 및 응용**,** 회원 간의 친목도모와 더 나아가 학교 및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**.**

제**5**조 **(**활동**)** 본 회는 전**4**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**. 1**항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분석**,** 응용 및 연구 활동에 따른 활동**.**

**2**항 회원의 자질 향상 및 친목 도모를 위한 집회 활동**.**

**3**항 학교**,** 지역사회**,** 국가 발전을 위한 대외 집회 활동**.**

**4**항 위의 **1,2,3,**항의 활동에 필요한 정보 교류 활동**.**

제**6**조 **(**지도**)** 본 회의 목적과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수지도를 둔다**.**

제 **2**장 회원

제**7**조 **(**회원의 정의**)** 회원의 정의는 아래와 같이 한다**.**

**1**항 본 회의 회원은 준회원**,** 정회원**,** 졸업회원과 휴학회원으로 분류한다**.**

**2**항 준회원은 소정양식의 서류를 제출한 재학중인 회원을 말한다**.**

**3**항 정회원은 동아리 회비를 **2**회 이상 납부한 재학중인 회원을 말한다**.**

**1**절 임원진은 새로운 정회원을 모든 회원이 알 수 있도록 **30**일 이상 공고한다**.**

**2**절 예외 사항 발생시 임원진의 **1/3**이상 발의에 의해 정회원으로 승격시킨다**.**

**4**항 졸업회원은 숭실 대학교를 졸업한 정회원을 말한다**.**

**5**항 휴학회원은 입대 및 기타 사유로 휴학중인 회원을 말한다**.**

**6**항 중도이탈인원은 재학중이지만 동아리 활동을 중단한 인원을 말한다**.**

제**8**조 **(**권리와 위무**)**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**.**

**1**항 본회에 가입한 모든 회원은 본회가 개최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**. 2**항 정회원은 투표권을 가진다**.**

**3**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**.**

**4**항 준회원 및 정회원은 매 학기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**.**

**5**항 준회원의 과정을 마친 신규 정회원은 **1**년간 임원 활동의 의무를 진다**.** 즉 임원활동을 거부하는 자는 준회원으로 강등된다**.**

**6**항 회원 간의 우선순위는 정회원에서 준회원 순으로 한다**.** 준회원 내에서는 신입생에서 재학생으로 한다**.**

[여기에 입력]

**7**항 회비 납부기간을 가입이후 **1** 개월로 정한다**.** 이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된다**.** 이를 어길 시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**.**

**8**항 중도이탈인원이 동아리 재등록을 하려면**,** 정회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**. (**단**,** 재등록한 인원은 다시 준회원 과정부터 시작한다**.)**

제 **3**장 임원

제**9**조 **(**구성**)**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**.**

**1**항 임원은 회장**,** 부회장**,** 학술 연구부장과 각 부장으로 구성된다**.**

**2**항 학술 연구부장을 제외한 임원은 **8**조**5**항의 자격을 갖춘 정회원이어야 한다**.**

임원은 **8**조**5**항의 자격을 갖춘 정회원이어야 한다**. (**단**,** 정회원이 아닌 임원 대상자는 정회원 승격 심사를 실시한다**.)**

**3**항 **8**조 **5**항의 의무에 입각하여 재학 중인 신규 정회원은 **1**년간 임원활동을 하여야 한다**. 4**항 임원활동 중 휴학으로 인해 임원활동을 중지할 때는 다른 정회원에게 인계를 하도록 한다**.** 이후 복학하였을 때에는 남은 임원활동을 이어서 하도록 한다**.**

**5**항 동아리의 목적과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문들을 둔다**. (**단**,** 고문의 임명은 회장이 한다**.)** 제**10**조 **(**조직**)** 임원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**.**

**1**항 회장단은 회장**,** 부회장**,** 총무로 한다**.**

**2**항 회계**,** 교육**,** 기획은 기본적으로 둔다**.**

**3**항 각 부서를 임원진의 업무를 참조하여 임원진의 수에 따라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다**.** 제**11**조 **(**선출**)** 임원 선출은 다음에 따른다**.**

**1**항 회장의 임명은 지명으로 하고**,** 부회장은 총회에서 출석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**. 2**항 총무**,** 각부 부장은 신임회장단과 차기 임원 대상자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**.**

**3**항 기타 임원들은 신임 회장단이 선임한다**.**

**4**항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**.**

**5**항 신임 임원진은 임원 조직표를 **30**일 이상 공고한다**.**

**6**항 임원진의 임기는 **1**년으로 한다**. (**단**,** 고문의 임기 제한은 없다**.)**

**7**항 임원진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**,** 기존 임원의 임기를 연장한다**.**

제**12**조 **(**권리와 의무**)** 각 임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**.**

**1**항 본회의 제반 사항 심의 조정권

**2**항 개정안 발의권

**3**항 임시 총회의 개최발의권

**4**항 각 임원들은 서로의 업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진다**.**

제**13**조 **(**소집**)** 임원 회의는 정기 임원 회의와 임시 임원 회의로 구성된다**.**

**1**항 정기 임원 회의는 월 **2**회로 한다**.**

**2**항 임시 임원회의는 회장단 또는 임원 **3**인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한다**.**

**3**항 임원회의에서는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**.**

제**14**조 **(**탄핵**)** 임원의 탄핵은 다음을 따른다**.**

**1**항 임원의 탄핵

[여기에 입력]

**1**절 임원진의 **1/3**이상의 발의로 탄핵이 제기된다**.**

**2**절 임원회의의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한다**.**

**2**항 회장의 탄핵

**1**절 정회원의 **1/3**이상의 발의로 탄핵이 제기된다**.**

**2**절 총회의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한다**.**

**3**항 탄핵 대상자는 다시 임원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**.**

제 **4**장 활동

제 **15**조**(**소모임**)**본회는 전 **4**조와 **5**조의 목적과 활동을 위하여 소모임을 갖는다**.**

**1**항 재학중인 준회원과 정회원은 최소 **1**개 이상의 소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**. 2**항 소모임의 개설은 정회원의 건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**.** 이는 임원진 회의에서의 승인하에 개설하도록 한다**.**

**3**항 각각의 소모임은 한 학기에 한번 이상의 재학중인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발표활동을 하여야 한다**.** 제 **16**조**(**총회**)**

**1**항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**.**

**2**항 총회는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**.**

**3**항 본회의 정회원 **1/3**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**.**

**4**항 의장은 총회동안 휴학회원에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**.**

**5**항 총회의 의장은 부회장으로 한다**.**

**6**항 정기 총회는 매년 **2**회 각 학기 방학 후 **3**주 이내에 소집한다**.**

**7**항 특별사유 발생시 정회원의 **1/3**의 요구 또는 임원회의 요구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한다**. 8**항 정기 총회는 최소 **14**일전까지 통지한다**.** 임시 총회는 최소 **5**일전까지 공고한다**. 9**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**.**

**1**절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

**2**절 회장 선출에 과한 사항

**3**절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
**4**절 학술 연구에 관한 사항

**5**절 기타 중요 사항

**10**항 총회의 의결은 다음에 따른다**.**

**1**절 회칙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한다**.**

**2**절 회칙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**.**

**3**절 가부 동일시 의장이 의결한다**.**

제**17**조**(**업무**)**

**1**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**,** 본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**.**

**2**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**,** 회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회장을 대행한다**. 3**항 교육부는 본 회의 학술연구 활동을 총괄하며**,** 교육 및 장비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한다**. 4**항 편집부는 본 회의 모든 편집 활동**,** 도서 및 각종 자료관리**,** 서기업무 등을 주관한다**. 5**항 회계는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**.**

[여기에 입력]

**6**항 기획부는 본 회의 각종 행사를 기획하는 사무를 주관한다**.**

**7**항 홍보부는 본회의 교내**,** 교외의 홍보 및 각종 공고와 연락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**. 8**항 홍보부는 섭외부의 기능도 하여**,** 대회협력 업무 및 각종 행사장소 섭외를 주관한다**. 9**항 유니코사 운영위원은 본회의 회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**.**

제**18**조**(**회계연도**)** 본 회의 회계 연도는 **1**년으로 하며**,** 매년 **1**월 **1**일부터 이듬해 **1**월 **1**일까지로 한다**.** 제**19**조**(**회계**)** 임원진은 결산을 정기 총회에서 보고한다**.**

제**20**조**(**재원**)** 본 회는 다음의 항들로 재원을 삼는다**.**

**1**항 회비**(**신입 회원 포함**)**

**2**항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

**3**항 임원은 매 학기 초 해당학기의 모든 회비 징수 대상자를 파악하여 게시하고 잔액납부가 될 때까지 명단을 공고한다**.**

제**21**조**(**지출**)** 본 회의 지출은 전 **4**조와 **5**조의 목적과 활동을 위하여 이루어진다**.** 제**22**조**(**회비**)** 회비는 정회원 및 준회원을 대상으로 징수하며**,** 금액 및 방법은 임원 회의에서 결정하고 그 기록을 유지 및 관리한다**.** 단**,** 정회원은 **4**학년 회비를 면제받는다**.**

제**23**조**(**발의**)** 회칙 개정 발의는 다음을 따른다**.**

**1**항 회장

**2**항 임원 과반수

**3**항 정회원 **1/3**이상

제**24**조**(**의결**)** 회칙 개정의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**.**

**1**항 회칙 개정발의가 있을 시**,** 이 개정안은 총회 소집 **14**일전에 공고한다**.**

**2**항 총회 출석 **2/3**의 찬성으로 개정한다**.**

제**25**조**(**공표 및 발효**)** 전 **25**조에 의해 의결된 회칙은 의결 즉시 공표하고 부칙에 따른다**.** 제**26**조**(**처벌**)**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정하여진 대로 처벌한다**.**

**1**항 정기 총회에 무단 결석한 자에 대하여 경고한다**.**

**2**항 본 회의 회비 납부를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경고한다**.**

**3**항 본 회의 명예 훼손자 및 발전에 장애를 주는 자에게는 총회는 출석 **2/3**이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한다**.** 제**27**조**(**복지**)** 스터디 활동에 대한 복지는 다음을 따른다**.**

**1**항 스터디장은 **1**학기**/**방학동안 성실히 스터디를 진행했으면 회비의 **50%**가 환급된다**. 2**항 성실히 참여한 스터디원들 대상으로 **1**회 회식비가 지원된다**.**

**3**항 스터디 활동에 관련된 세부 규정은 **“SSCC**스터디세부규정**”**을 참고한다**.**

제 **5**장 동기회

제**28**조**(**설치**)** 임원진 이상의 기수는 동기회를 조직할 수 있다**.**

제**29**조**(**권리와 의무**)**

**1**항 각 동기회는 회당 동기회의 대표자를 임원 회의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**.**

**2**항 각 동기회는 총회 및 각종 행사에 대한 통보를 받는다**.**

[여기에 입력]

제 **6**장 동아리 등록

제 **1**조 **(**등록**)**

**1**항 동아리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숭실대학교 학칙 및 동아리연합회의 회칙에 따른다**.**

제 **7**장 부칙

제**1**조 전 각조에서 사용한 본 회란 숭실 컴퓨팅 클럽을 지칭한다**.**

제**2**조 준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신입 회원은 **2**학년 이하의 숭실 대학교 재학생이다**.** 제**3**조 본 회의 의결은 다음 순서를 따른다**.**

**1.** 회칙

**2.** 총회 및 정기 집행의 의결

**3.** 임원 회의 결정

**4.** 회장의 재량권

제**4**조 본 회칙은 **1984**년 **3**월 **1**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**.**

본 개정 회칙은 **1985**년 **3**월 **1**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**.**

본 개정 회칙은 **1986**년 **3**월 **1**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**.**

본 개정 회칙은 **1987**년 **3**월 **1**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**.**

본 개정 회칙은 **1988**년 **3**월 **1**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**.**

본 개정 회칙은 **1989**년 **9**월 **1**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**.**

본 개정 회칙은 **1991**년 **3**월 **1**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**.**

본 개정 회칙은 **1992**년 **3**월 **1**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**.**

본 개정 회칙은 **1992**년 **12**월 **19**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**.**

본 개정 회칙은 **1997**년 **12**월 **27**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**.**

본 개정 회칙은 **2002**년 **12**월 **21**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**.**

본 개정 회칙은 **2006**년 **3**월 **1**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**.**

본 개정 회칙은 **2014**년 **12**월 **19**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**.**

본 개정 회칙은 **2020**년 **4**월 **1**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**.**

본 개정 회칙은 **2021**년 **3**월 **31**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**.**

본 개정 회칙은 **2021**년 **12**월 **18**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**.**

본 개정 회칙은 **2022**년 **2**월 **4**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**.**

[여기에 입력]

개정안

**[**변경사항**]**

**1**장 **1**조 **(**명칭**)** 본 회의 명칭은 숭실 컴퓨팅 클럽이라고 하며 **S.S.C.C**를 약칭으로 한다**. ->** 제**1**조 본 회의 명칭은 숭실 컴퓨팅 클럽이라고 하며 **SSCC**를 약칭으로 한다**.**

**4**장 제**27**조**(**복지**)** 스터디 활동에 대한 복지는 다음을 따른다**.**

**->**제**27**조**(**학술활동**)** 스터디**,** 프로젝트**,** 세미나 등의 학술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은 **“SSCC**학술세부규정**”**을 참고한다**.**

**4**장 **27**조 **1**항 스터디장은 **1**학기**/**방학동안 성실히 스터디를 진행했으면 회비의 **50%**가 환급된다**. ->**삭제

**4**장 **27**조 **2**항 성실히 참여한 스터디원들 대상으로 **1**회 회식비가 지원된다**.**

**->**삭제

**4**장 **27**조 **3**항 스터디 활동에 관련된 세부 규정은 **“SSCC**스터디세부규정**”**을 참고한다**. ->** 삭제

**3**장 **11**조 **1**항 회장의 임명은 지명으로 하고**,** 부회장은 총회에서 출석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**. ->** 회장의 임명은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고 관련 세부 내용과 절차는 다음 항에 따라 정한다**. 3**장 **11**조 **2**항 총무**,** 각부 부장은 신임회장단과 차기 임원 대상자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**. ->**회장은 후보자 등록 후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**.**

**3**장 **11**조 **3**항 기타 임원들은 신임 회장단이 선임한다**.**

**->**회장 후보의 경우 회원 **15**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후보로 추천받아 후보자 등록 할 수 있다**.**

**3**장 **11**조 **4**항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**.**

**->**후보로 추천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퇴할 수 있다**.**

**3**장 **11**조 **5**항 신임 임원진은 임원 조직표를 **30**일 이상 공고한다**.**

**->**회장의 선출에는 총회에 참석한 회원의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**.**

**3**장 **11**조 **6**항 임원진의 임기는 **1**년으로 한다**. (**단**,** 고문의 임기 제한은 없다**.)**

[여기에 입력]

**->**전항의 방법들로 선출 과정 중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**,** 득표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회장으로 선출된다**.**

**3**장 **11**조 **7**항 임원진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**,** 기존 임원의 임기를 연장한다**.**

**->**부회장**,** 총무는 신임회장과 기존 임원들의 협의하에 지명으로 결정한다**.**

**[**새로운 안**]**

**2**장 **7**조 **9**항 새로 가입한 준회원은 가입한 학기 내에 임원들이 정한 필수 학술 활동에 반드시 참여해야하며**,** 참여하지 않을 경우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**.**

**3**장 **11**조 **8**항 각부 부장및 기타 임원들은 신임회장단과 차기 임원 대상자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**. 3**장 **11**조 **9**항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**.**

**3**장 **11**조 **10**항 임원진의 임기는 **1**년으로 한다**. (**단**,** 고문의 임기 제한은 없다**.)**